##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05

발의연월일: 2025. 2. 25.

발 의 자: 한준호 · 복기왕 · 박상혁

김병주 · 김문수 · 민형배

이용우 • 정준호 • 정을호

김영환 · 김용민 · 이건태

이소영 · 김성회 · 김동아

조승래 • 모경종 • 박균택

전현희 • 이성윤 • 남인순

의원(2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에게 '역량 있는 건축사'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, '역량 있는 건축사'에게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및 창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음.

그런데 해당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한 점이 있어,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.

따라서, 최근 10년간 정부·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(UIA)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'역량 있는 건축사'에서 '입상 건축사'로 명

칭을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4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 중 "역량 있는 건축사(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를 "건축과 관련한 공모전,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(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를 말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입상 건축사"라 한다)"로,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"를 "입상 건축사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제2호 중 "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"를 "입상 건축사"로 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3조(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	제13조(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		
양성) ① ~ ③ (생 략)	양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	4		
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			
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			
하기 위하여 <u>역량 있는 건축사</u>	건축과 관련한 공모 <u></u>		
(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	전,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		
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	으로 입상한 자로서 대통령령		
<u>다)</u> 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	으로 정하는 건축사(「건축사		
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	법」에 따른 건축사를 말하며,		
자를 선정하는 경우 <u>대통령령</u>	이하 이 조에서 "입상 건축사"		
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	라 한다)		
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			
할 수 있다.	<u>입상</u>		
	<u>건축사</u>	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		